



보험금 청구서

아래의 항목을 모두 작성하시고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총 3장)를 모두 접수해 주셔야 정상적인 보험금심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문의전화 : 고객센터 1588-0058)

*우편(등기)보내실 곳:(우)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시그나타워 18층 (주)라이나생명 보험금심사담당자 앞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금 수령을 위임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 위임장」 및 피위임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보험계약의 수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기재하신 주소는 보험금 심사 및 안내문 발송에 사용됩니다. 계약 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고객센터 1588-00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와의 관계 (□에 V표시)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부모(친권자)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친척/지인/후견인/기타
보험금수령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청구서상 기재하신 계좌가 본인계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와 수의자 외 대리인 대표 상속인 수령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접수증 E-Mail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유선 @ 지급설명서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유선
보험금 지급 안내 신청	※ E-Mail로 선택하신 경우 고객님의 E-Mail 주소를 상단 공란에 작성 바랍니다. ※ 작성하지 않거나 당시에 고객님의 E-Mail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안내해 드립니다.[해당 E-Mail 정보는 보험금 지급 안내 시에만 활용되며, 당사에 E-Mail 정보가 없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1588-0058)로 연락 바랍니다.] ※ 접수 및 지급에 대한 심사 진행 단계는 SMS로 별도 안내됩니다. ※ 지급설명서는 보험계약명, 지급금부, 금액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세부내용이 기재되어, 신청하신 방법에 따라 발송/안내해 드립니다. ※ 어느 곳에도 V표시를 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전화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우편 안내만 진행됩니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업체에 따라 별도의 우편(지급지연안내문) 및 전화 안내가 진행됩니다.		

■ 보험금 청구 세부내용(□에 V표시)

발생원인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청구사유 (중복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해 <input type="checkbox"/> 진단 <input type="checkbox"/> 치과치료 <input type="checkbox"/> 수술 <input type="checkbox"/> 입원 <input type="checkbox"/> 통원 <input type="checkbox"/> 실손 <input type="checkbox"/> 치료(골절, 당뇨 치료, 한방 치료 포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수급권자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해당 부분에 V 체크하시면 의료수급권자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 드리고 의료 수급 권리임을 확인 되면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사고내용 (상세하게작성)	사고일시 년 월 일 사고경위
	실손의료비 청구 시 기재 병명 ※ 치료병명이 2개 이상인 경우, 영수증 상단에도 각각 병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안내 보험업법 제 95조의 2 등에 따라, 보험금 청구,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① 청구하신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단, 지급사유의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급 지연시 보험업법에 따라 전화로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시 약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단 해당사유 발생일이 2015년 3월 12일 이전일 경우 2년)
- ③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 콜센터(1588-0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및 주요 안내(보험금 지급 및 심사 절차 안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손해사정사건임 및 고객님의 권리사항(의료심사에 관한 안내 등)」와 「보험금 청구서류에 필요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보험금 심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현장 확인실사(보험금지급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④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조작, 피해과장 등)는 범죄이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위 확인 날짜를 기재해주시고 아래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만 성함 기재 및 서명(또는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또는 날인)이 누락되는 경우 정상적인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보험수익자 서명란에 "상동"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	(서명 또는 날인)	친권자 (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보험수익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및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항목에 V표시하여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합니다.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대리작성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당사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와 수의자가 동일하면 [피보험자란]에만 V표시 하셔도 됩니다.

※ 아래에 와 같이 굵게 표시된 부분은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에 V 표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여부

피보험자

동의함

수의자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보험금지급 · 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 또는 입력 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금융거래(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 · 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 접수) 관련 업무

■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계좌정보, 귀사 및 타보험사 [체신관서 (우체국보험, 공제사업자 포함)]의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정보(사고정보 포함)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공공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 의료기관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다른 보험회사와의 소송관련 정보
- 보험사고증명서류(진단서 등) 및 발급 의료기관에 추가 조회하여 확인한 의료 정보
(접수해주신 보험사고증명서류(병원발급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미비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심사 담당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유선 확인 후 심사할 수 있으며 유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님께 추가로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보험사기 방지 · 적발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 이용하며, 별도 보관함)

※ 거래종료일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등), 채권 · 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안에 V 표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피보험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수의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	------------------------------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 보험금지급 · 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 또는 입력 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 이용하며, 별도 보관함)

※ 거래종료일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등), 채권 · 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안에 V 표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피보험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수의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검찰, 경찰, 법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 · 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 · 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 보험사고 입력 대행업체, 의료기관 · 의사, 변호사, 콜센터 (고객안내업무), 우편물 발송 대행 업체 등

※ 제공기관명/업무 내용 등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 <http://www.lina.co.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 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소견서, 진료기록열람,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 등
-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단, 제공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 됩니다.)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거래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

※ 거래종료일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등),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단,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안에 V 표시)

질병·상해정보 처리 동의여부	피보험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수의자는 질병·상해정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여부	피보험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수의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피보험자/수의자/친권자/후견인이 각각 다른 경우, 해당하는 분 모두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수의자를 지정하는 경우, 아래 수의자 서명란에는 대표수의자 1인께서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필(CLAME1709-01-SJGM-OYN)

20 년 월 일

피보험자	(서명 또는 날인)	친권자 (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보험수의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우편(등기)보내실 곳

우편번호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시그나타워 18층 라이나생명(주) 보험금심사 담당자 앞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03/03]

관리번호 : CLAIM-CONSENT-20171012



FATCA-CRS 본인확인서(개인용)

아래의 항목은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수의자가 외국 국적이면서 해외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경우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거하여, 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하신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됩니다.

금융회사는 기재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국적		전화번호	
주소				실명번호	

2 해외 거주자 여부 확인

■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①과 ②는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과 ②는 중복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미국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합니까? '예'인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미국시민권자(이중국적자포함) <input type="checkbox"/> 미국영주권자 <input type="checkbox"/> 미국 세법상거주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② 대한민국 이외의 조세목적상 해외 거주지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①, ② 모두 '아니오' 인 3납세자정보는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3 납세자 정보

해외거주자 인 경우 영문성명, 영문주소, 조세목적상 거주지국 및 납세자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성명	성(SurName)	명(GivenName)	
거주지국가1		영문주소1	
납세자번호1 (TIN/SSN 또는 PTIN)		납세자번호 미기재사유 (미국이외국가해당)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요구 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이유:
거주지국가2		영문주소2	
납세자번호2 (TIN/SSN 또는 PTIN)		납세자번호 미기재사유 (미국이외국가해당)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요구 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이유:

4. 본인확인

- 본인은 위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작성 시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해당 법률에 따라 관련당국의 요구 및 금융회사의 의무 이행을 위해 관련당국에 제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동의자서명란

본인

(서명)

대리인

(서명)

관계:

■ 본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중 일부 또는 전체 사항을 미 기재하거나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우호적 고객으로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관리번호 : CLAIM-FATCA-CRS-20170201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 우편(등기) 보내실 곳 : (우)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시그나타워 18층 라이나생명주 보험금사심담당자 앞(고객센터 ☎ 1588-0058)

구분	참고	구비서류											
공통접수 서류	전체 공통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험금 청구서(보험금 수령 계좌번호 기재) ②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③ 수의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유형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상 기재하신 계좌가 본인계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와 수의자 외 대리인 대표 상속인 수령 사통장사본 제출 · 수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수의자와 피부임자에 금주가 작성하신 「보험금 수령 위임장」, 「보험금 수령 위임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당사양식)」 수의자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 제출 · 수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② 미성년자가 「본인」으로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③ 친권자가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변제 의무확인서(당사양식) 제출 ※ 단, 보험금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작성하고 인감 날인한 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지정서(당사 양식),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의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의식불명/장애 등 정신적 제약의 경우 수의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이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가능) 											
재해입증 서류	재해보험금 청구 시 필수 제출 (택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사고·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공제조합(버스, 회화, 택시 등) 사고사실 확인서 각 기관(보험회사) 2 산업재해 산업체 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금여지급획인서 근로복지공단 3 군인재해사고·공무상병인증서 복무 군부대(치료 군병원 행정실 또는 업무과 문의) 등 4 의료사고 등 법원 분장·법원판결문 법원(민원실) 5 기타 재해사고·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 확인서 각 공공기관 6 확인서류 별급불가 재해사고·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사망	기본(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과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원본 · 수의자 미지정(사상속인) 추가 요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속관계 확인서류: (구)재직등본, 사망자(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②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주가): "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지정서(대표수의자지정서/수의자 전원 인감날인 필요)", 수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 일시금 청구 및 수령 요청서(당사양식) → 가족사망플랜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로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유형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자 미지정(사상속인) 추가 요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속관계 확인서류: (구)재직등본, 사망자(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②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주가): "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지정서(대표수의자지정서/수의자 전원 인감날인 필요)", 수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 일시금 청구 및 수령 요청서(당사양식) → 가족사망플랜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로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입원	기본(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과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또는 소견서(선택 가능) 											
수술	기본(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통원	기본(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과 통원치료일자가 모두 기재된 통원 확인서 및 재해입증서류 											
골절	기본(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절부위 및 재해골절 최초 진단일 기재된 서류, 재해입증 서류 											
장해	기본(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유장해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가능한 장해인 경우에 진단서 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다리의 관절 척추의 운동장애는 AMA(영구적 신체 장애 평가지침)에서 정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 내용 및 가입시기에 따라 구비 서류 및 지급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문의 바랍니다.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신부전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지절단·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비장, 신장작출 비장, 신장작출 수술일 기재 ·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장기이식(심장·폐·신장·간장)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진단	기본(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최종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및 암 진단 확진 조작검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치매의 경우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 형 별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암</td> <td>① 백혈병·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td> <td>②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작검사 못할 경우)</td> </tr> <tr> <td></td> <td>③ 간·방사선 판독결과지(조작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td> <td></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심근경색</td> <td colspan="2">·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심근호소검사결과지 등</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뇌출혈</td> <td colspan="2">· 뇌 CT, MR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td> </tr> </table>	암	① 백혈병·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②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작검사 못할 경우)		③ 간·방사선 판독결과지(조작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심근경색	·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심근호소검사결과지 등		뇌출혈	· 뇌 CT, MR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암	① 백혈병·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②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작검사 못할 경우)											
	③ 간·방사선 판독결과지(조작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심근경색	·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심근호소검사결과지 등												
뇌출혈	· 뇌 CT, MR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치매</td> <td colspan="2">· 인지기능검사(CDR)결과지, 한국형간이인지기능 검사결과지(MMSE), 영상검사결과지</td> </tr> <tr> <td></td> <td colspan="2">▶ 치매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악관상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전화 1588-0058)를 통해 가입하신 보험 계약의 보장내용 및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 </tr> </table>	치매	· 인지기능검사(CDR)결과지, 한국형간이인지기능 검사결과지(MMSE), 영상검사결과지			▶ 치매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악관상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전화 1588-0058)를 통해 가입하신 보험 계약의 보장내용 및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 인지기능검사(CDR)결과지, 한국형간이인지기능 검사결과지(MMSE), 영상검사결과지												
	▶ 치매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악관상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전화 1588-0058)를 통해 가입하신 보험 계약의 보장내용 및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계산서(영수증)와 진료비세부내역서(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실손	유 형 별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입원</td> <td colspan="2">· 진단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과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또는 소견서(선택 가능)</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통원</td> <td colspan="2">① 3만원 이하 청구의 경우: 병원진료비 영수증(질병명 기재)</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처방</td> <td colspan="2">② 3만원 이상 청구의 경우: 진료기간이 동일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기재된 처방전</td> </tr> </table>	입원	· 진단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과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또는 소견서(선택 가능)		통원	① 3만원 이하 청구의 경우: 병원진료비 영수증(질병명 기재)		처방	② 3만원 이상 청구의 경우: 진료기간이 동일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기재된 처방전			
입원	· 진단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과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또는 소견서(선택 가능)												
통원	① 3만원 이하 청구의 경우: 병원진료비 영수증(질병명 기재)												
처방	② 3만원 이상 청구의 경우: 진료기간이 동일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기재된 처방전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장기요양 간병자금(필수)</td> <td colspan="2">·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및 장기요양 인정서</td> </tr> </table>	장기요양 간병자금(필수)	·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및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요양 간병자금(필수)	·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및 장기요양 인정서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 (www.mwng.go.kr)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재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진단서 등 청구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시는 경우, 접수 전에 반드시 당사 물센터(1588-005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신사과 과정에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추가 제출해주세요)

■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cock.or.kr>) 홈페이지(성우약국비급여 진료비 정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안내는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기본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사고내용, 특성·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물센터(1588-0058) 또는 홈페이지(www.hicock.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18층 라이나생명 보험금심사 담당자 앞(고객센터 ☎ 1588-0058)

■ 공통서류 : 1. 보험금청구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당사양식) 2. 수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치아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보험금 청구 시	치아 충전, 크라운치료 보험금 청구 시
<p>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수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p> <p>2. 진단서 또는 당사 치과치료확인서(치과 병의원 담당자가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발거한 영구치의 치아번호 • 영구치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치료 받은 보철치료의 종류 및 시술일자, 치료예정)종료일 <p>3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p> <p>4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또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p> <p>※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판독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p>	<p>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수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p> <p>2. 당사 치과치료확인서(치과 병의원 담당자가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치료한 치아번호 • 치료 받은 치아의 치료의 종류(치료한 재료 포함)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및 치료원인 • 치과치료 진단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종료일
<p>발치, 치수(신경),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보험금 청구 시</p> <p>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수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p> <p>2. 당사 치과치료확인서(치과 병의원 담당자가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발거한 영구치의 치아번호 • 영구치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 • 치수신경치료 치아번호 • 치수신경치료일자 • 보험급여 적용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일자 	<p>치과통원 보험금 청구 시</p> <p>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수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p> <p>2.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통원일자 별 진료비 납입 영수증(카드결제영수증은 접수 및 심사불가)</p> <p>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방사선촬영 보험금 청구 시</p> <p>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수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p> <p>2. 당사 치과치료확인서(치과 병의원 담당자가 작성)</p> <p>3.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영수증</p>

■ 회사는 상기 서류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금계좌를 수의자 아닌 타인계좌로 위임할 경우 보험금 수령 위임장(당사양식, 인감날인) 및 원수의자의 인감증명서(보험금청구 및 수령 위임용)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수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청구 및 수령 하셔야 하며, 친권 확인을 위한 미성년자(수의자)기준의 기본증명서, 기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서명의 변제의무확인서(당사양식) 또는 대표수의자(정동의서(당사양식, 동의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포함))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치아보험 주요 안내사항

치아보험 보장 내용에 대한 주요 안내사항입니다. 가입하신 상품별 보장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치아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주요 안내사항

1. 보철치료 보장은 보철치료 보장개시일부터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가능하며,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보철치료 시,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2. 가철성의치(Denture, 틀니)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3. 고정성가공의치(Bridge, 브릿지) 및 임플란트(Implant)의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연간 한도 초과 시 치료시기에 상관없이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철치료에 대하여 수리, 복구 및 대체치료의 경우 해당 보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아 충전, 크라운 치료 주요 안내사항

1. 충전치료보장은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합니다.
2. 크라운치료보장은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합니다.

■ 시파동원 수뇨시수설원(뇨뇨설원) 시식세거(스케일링) 망사선촬영 모업금 모업금

1. 의료기관 중 치과에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 또는 통원 시 보장해드립니다.
2.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3. 건강보험 미적용시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 "연간"이라 함은 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치아보험의 보장내용은 보험계약일 및 상품종류에 따라 보장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확인서 (치과 병/의원)

치과 치료확인서 작성요령
(치과 병/의원 작성용)



환자명	주민번호	초진일	년	월	일
-----	------	-----	---	---	---

■ 초진 당시 결손 부위

※ 해당 치아 숫자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용도: 보험회사 제출용)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 치료 내용

※ 해당하는 치료에 □ 표시와 기타는 치료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 일부 치료는 보험급여 적용 시에만 보장됩니다.

구분	치료 종류(□란에 "✓" 표시)			질병분류 코드	치아번호	치료일(정착일)
스케일링	□ 보험급여	※ 보험급여 적용 시에만 보장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주요치주 질환치료 (잇몸질환)	□ 치주소파술	□ 치근활택술	□ 기타()	/□ 보험급여		년 월 일
	□ 치주소파술	□ 치근활택술	□ 기타()	/□ 보험급여		년 월 일
방사선 촬영	□ 구내방사선	□ 파노라마방사선	/□ 보험급여			년 월 일
	□ 구내방사선	□ 파노라마방사선	/□ 보험급여			년 월 일
	□ 구내방사선	□ 파노라마방사선	/□ 보험급여			년 월 일
직접충전	□ 아밀감	□ 레진	□ 기타()			년 월 일
	□ 아밀감	□ 레진	□ 기타()			년 월 일
	□ 아밀감	□ 레진	□ 기타()			년 월 일
	□ 아밀감	□ 레진	□ 기타()			년 월 일
	□ 아밀감	□ 레진	□ 기타()			년 월 일
간접충전 (인레이)	□ 금/도재	□ 기타()				년 월 일
	□ 금/도재	□ 기타()				년 월 일
	□ 금/도재	□ 기타()				년 월 일
	□ 금/도재	□ 기타()				년 월 일
	□ 금/도재	□ 기타()				년 월 일
크라운/ 치수(신경) 치료	□ 크라운	□ 치수(신경)치료				년 월 일
	□ 크라운	□ 치수(신경)치료				년 월 일
	□ 크라운	□ 치수(신경)치료				년 월 일
	□ 크라운	□ 치수(신경)치료				년 월 일

■ 발치/임플란트/브릿지/틀니

※ 발치 치과와 보철치료 치과가 다른 경우, 해당 치과에서 시행한 내용만 기재해 주십시오.

※ 브릿지는 pontic(브릿지가 장착된 결손부 치아)를 기재해 주십시오.

치료 종류(□란에 "✓" 표시)	질병분류 코드	치아번호	발치일	치료일(식립일/정착일)
□ 발치 □ 임플란트 □ 브릿지 □ 틀니			년 월 일	년 월 일
□ 발치 □ 임플란트 □ 브릿지 □ 틀니			년 월 일	년 월 일
□ 발치 □ 임플란트 □ 브릿지 □ 틀니			년 월 일	년 월 일
□ 발치 □ 임플란트 □ 브릿지 □ 틀니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병(의)원(직인) 및 의사(인)이 누락된 경우 본 치료확인서는 무효입니다.

병 원 명	(직인)	의사성명	(인)	면허번호	
전화번호	() -	작성 일		년 월 일	



치과치료확인서 (치과 병/의원) 작성요령

치과 치료확인서 작성요령
(치과 병/의원 작성용)

환자명	홍길동	주민번호	654321-1234XXX	초진일	2013년 8월 8일
-----	-----	------	----------------	-----	-------------

■ 초진 당시 결손 부위 ※ 해당 치아 숫자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용도: 보험회사 제출용)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 치료 내용 ※ 해당하는 치료에 ▼ 표시와 기타는 치료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 일부 치료는 보험급여 적용 시에만 보장됩니다.

구분	치료 종류(□란에 "▼" 표시)	질병분류 코드	치아번호	치료일(정착일)
스케일링	▼보험급여 ※보험금여 적용 시에만 보장 가능합니다.	K05	— (전악)	2016년 5월 1일
주요치주 질환치료 (잇몸질환)	□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 □기타() / □보험급여	K05	44-47	2016년 5월 1일
	▼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 □기타() / □보험급여	K05	33-43	2016년 5월 1일
방사선 촬영	□구내방사선 □파노라마방사선 / □보험급여			년 월 일
	□구내방사선 □파노라마방사선 / □보험급여			년 월 일
	□구내방사선 □파노라마방사선 / □보험급여			년 월 일
직접충전	□아밀감 ▼레진 □기타()	K02	17	2016년 5월 1일
	□아밀감 □레진 ▼기타()	K02	24	2016년 5월 1일
	▼아밀감 □레진 □기타()	K02	35	2016년 5월 1일
	□아밀감 □레진 □기타()			년 월 일
	□아밀감 □레진 □기타()			년 월 일
간접충전 (인레이)	▼금/도재 □기타()	K02	16	2016년 5월 1일
	□금/도재 ▼기타()	K02	27	2016년 5월 1일
	□금/도재 □기타()			년 월 일
	□금/도재 □기타()			년 월 일
	□금/도재 □기타()			년 월 일
크라운/ 치수(신경) 치료	▼크라운 ▼치수(신경)치료	K04	37	2016년 5월 1일
	□크라운 ▼치수(신경)치료	K04	34	2016년 5월 1일
	□크라운 □치수(신경)치료			년 월 일
	□크라운 □치수(신경)치료			년 월 일

■ 발치/임플란트/브릿지/틀니

※ 발치 치과와 보철치료 치과가 다른 경우, 해당 치과에서 시행한 내용만 기재해 주십시오.

※ 브릿지는 pontic(브릿지가 장착된 결손부 치아)를 기재해 주십시오.

치료 종류(□란에 "▼" 표시)	질병분류 코드	치아번호	발치일	치료일(식립일/정착일)
▼발치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K05	11	2016년 1월 10일	2016년 2월 5일
□발치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K05	12	년 월 일	2016년 5월 5일
□발치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K05	13	2016년 1월 10일	2016년 5월 5일
▼발치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K05	26	2016년 3월 5일	년 월 일

상기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병(의)원(직인) 및 의사(인)이 누락된 경우 본 치료확인서는 무효입니다.

병원명	라이나 치과 병원 (직인)	의사성명	나의사 (인)	면허번호	1234XXX
전화번호	(02) 1111 - 1234	작성일			2016년 5월 14일

관리번호 : CLAIM_DENTAL_20170901